



일 시: 2026. 7. 00.(0)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제39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안보고

경 제 실

(사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협약(안)

□ 협약개요

- 협약체결: 2026. 8월 중(예정)
- 협약기관: 경기도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경남은행, 부산은행
※ 금융기관별 개별 협약
- 협약내용
 - **[협약목적]**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조융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융자 취급 금융기관 확대 (기존 협약금융기관 12개사* → 확대 17개사)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iM뱅크, 새마을금고
 - **[협약기간]** 협약 시행일로부터 1년 (해지 시까지 1년 단위 자동 연장)
 - **[협약내용]** 지원방법, 대출조건, 이차보전금의 신청 및 지급 등 13개 조항

« '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개요 »

- (지원규모) 1조 7,000억원 (협조융자 1조 5,000억원, 기금융자 2,000억원)
 - 운전자금 : 1조 2,000억원 (협조융자 1조 1,000억원, 기금융자 1,00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5,000억원 (협조융자 4,000억원, 기금융자 1,000억원)
- (지원내용)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
 - 협조융자 : 이차보전율 0.3~2.0% (추가 이차보전율 0.3~0.5%)
 - 기금융자 : 경기도 고시금리 2.90%
- (사 업 비) 2,755억원 (이차보전금 755억원, 융자금 2,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전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기대효과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접근성 극대화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경제실	지역금융과장	정책금융팀장
	남 공 웅 8008-6125	윤 여 삼 8008-613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협약서(안)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조융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도”와 “은행”이 적극 협력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방법) ① 본 협약에 의한 협조융자의 총 운용규모는 “도”가 정하는 당해 연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조융자 운용규모 이내에서 “도”가 지정한 중소기업 등에게 “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운용계획”에 포함된 “특별경영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 별도의 특별경영자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은행”에 통지하기로 한다.

③ “은행”은 위 제2항에 의거하여 “도”에서 통지하는 “특별경영자금 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의 수행) ① “도”는 조례 제11조 및 제14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3조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은행”에게 통보한다. “도”는 융자 지원 대상자 결정업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라고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에는 “경기신보”가 결정하여 “은행”에 통보한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가 지정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
2. 제1호에 의해 취급한 대출금 내역을 “경기신보”에 통지
3. 제1호에 의한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
4. 제1호에 의하여 대출 받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도”로부터 통보받은 중소기업 등이 대출신청을 하는 때에는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한다.

④ “도”로부터 분할상환유예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게 분할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분할상환금을 유예할 수 있다.

⑤ “은행”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신업무 관련 법령, 규칙 및 지침 등에서 금지하는 예금 등의 구속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대출업무의 총괄관리는 “은행”의 본점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와 협의하여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본부 또는 영업점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대출조건) “은행”은 본 협약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출조건을 준수한다.

1. 대출금액은 “도”가 결정하여 통보한 금액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는 “은행”이 본 협약대상 대출 차주별로 산정하되 제5조에 따라 “은행”이 고시하는 최고금리 이하로 한다.
3. 대출기간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에서 정한 자금별 대출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위 제2호의 대출금리에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를 기업부담금리로 하여 당해 대출 기업 등으로부터 징구한다.
5. 위 제4호의 이차보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차보전금은 “도”가 지급하며 “은행”은 제6조의 내용에 따라 지급을 신청한다.
6. 운전자금의 경우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대출기업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원하는 때에는 “은행”은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최고금리의 고시) ① “은행”은 실제 대출에 적용하는 최고금리를 “도”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고시금리는 “은행”의 결정으로 정하며, 변경 시기는 “은행”의 필요에 따르며, 변경 내용은 “도” 또는 “경기신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은행별 최고금리 고시표는 <별표1(예시)>과 같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도”가 “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을 산정하기 위한 이차보전율 기준 및 계산방법은 “도”가 정하는 운용계획에 따른다.

1. 이차보전율 기준 및 계산방법은 “도”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도”에서 문서를 통해 “은행”에게 통지하고 “은행”은 통지 받은 내용을 적용한다.
 2. “도”는 제1호의 이차보전율 기준과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과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차보전금은 기본이차보전율과 추가이차보전율을 더하여 계산하며, 추가이차보전율이 중복될 때는 기업에게 유리한 이차보전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차보전금을 제4조 제3호의 대출기간 동안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은행”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이차보전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도”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대출 받은 중소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 등이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휴·폐업·부도 또는 사업장을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 외에 대출기업이 대출금의 부정한 사용으로 “도”가 자금 환수를 통보한 경우
4. 중소기업 등이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이 경우 사유발생일(최초 연체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기간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⑥ “은행”은 제5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유로 이차보전금을 과오지급 받은 때에는 “도”에게 익월 이차보전금 정산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금의 정상상환 만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의 귀책사유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도”가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자료 제출 의무 및 협력) ① “은행”은 본 협약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 및 상환정보와 제6조 제5항 각 호의 사고내역 및 정상화 정보를 매월 이차보전금 청구시에 “도”가 원하는 형식으로 제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G-money”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는 본 협약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은행”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이때 “은행”의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와 “은행”은 G-money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G-money와 “은행”의 전산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8조(협약해지) ① “도” 또는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때
2. “은행”이 제6조 제6항 및 제7항과 제7조를 위반하여 “도”가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도” 또는 “은행”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1월

전까지 그 사유를 적시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에정일 2월전까지 그 사유를 적시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인계 등) ① 제8조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이전에 취급한 대출금의 관리는 “은행”이 계속한다.

② “은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도”가 인정하는 때에는 “은행”은 “도”가 지정한 자에게 지정기한 내에 모든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등) ①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수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용·제공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위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은행”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협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도”는 “은행”의 과실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요구를 받은 경우 “은행”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성실 의무 및 법적책임) ① “은행”은 본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수반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운용계획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침을 따르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의 해석이 상이한 사항은 “도”와 “은행”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거나,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에 따른다.

제13조(협약의 기간) 협약의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지 아니하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도”와 “은행”이 기명 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2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 ○ ○

○ ○ ○은행장

○ ○ ○

<별표1(예시)>

은행별 최고금리고시표(제5조 제3항 관련)

은행별	담보구분	변동금리		고정금리
		3년	8년	8년
○○은행	보증서(85% 기준)			
	부동산 등 담보			
	신용대출			

※ 고시된 최고금리는 최초 대출 승인시점 또는 최초 대출시점에만 적용한다.